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학교법인 국제법률경영학원

이사회 및 이사장 귀중

2016년 05월 10일

본 감사인은 첨부된 학교법인 국제법률경영학원의 법인회계 및 동 법인이 설립한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교비회계의 2016년 2월 29일과 2015년 2월 28일 현재의 합산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합산운영계산서와 합산자금계산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적정하게 작성할 책임은 학교법인의 경영자에게 있으며 본 감사인의 책임은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습니다.

본 감사인은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 및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 및 유의사항은 본 감사인이 재무제표가 중대하게 왜곡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확신하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재무제표상의 금액과 공시내용을 뒷받침하는 감사증거에 대하여 시사의 방법을 적용하여 검증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내용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학교법인이 적용한 회계원칙과 중요한 회계추정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감사인이 실시한 감사가 감사의견 표명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본 감사인은 믿습니다.

학교법인 및 설치학교 재무제표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및 동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서 정한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학교법인 국제법률경영학원의 법인회계와 동 법인이 설립한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각각의 재무제표와 그 합산재무제표는 2016년 2월 29일과 2015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운영성과 그리고 자금수지내용을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및 동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45길 3, 203 (양평동4가, 대한빌딩)
대일공인회계감사반(제291호)

공인회계사

손 기 군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2016년 05월 10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재무제표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